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1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침('96. 1. 20)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ㅇ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3조)
- ㅇ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위원수 : 20인이내
 - 기 능 :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 등
- ㅇ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안 제6조)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전문기관 등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음
- ㅇ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 ㅇ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안 제14조)
- ㅇ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ㅇ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ㅇ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

4. 참고자료

- ㅇ 입법예고 결과
 - · 입법예고기간 : 2002. 11. 7 ~ 2002. 11. 26(20일간)
 - ·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ㅇ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요령(도새마을13270-10360, 2001. 6. 12)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국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 주간) 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